

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과 권한위임으로도지사
의 사무가 시장·군수의 사무가 되어 존치근거가 상실된 본
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폐지함.

3. 폐지조례(안) : 불임과 같음

4. 관계법령
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
(불임과 같음)

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(조례 제2154호 1994.10.14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15조제2항

제15조(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등)②주무부장관은 제조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포장방법 및 포장재의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, 제조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32조제4항

제32조(재활용단지의조성등)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못쓰게 된 냉장고등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,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36조(청문) : 삭제

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37조(권한의 위임·

위탁) 같은법 시행령 제4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.
2.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

□ **자원의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한법 제42조**

제42조(과태료부과)①제40조 또는 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.②~④항 생략

□ **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 제2조**

제2조(권한재위임사항) ①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중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“별표1”과 같다.

(별표1) 권한재위임사무 - 환경위생과

-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,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·징수·자원의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, 제36조 및 제42조